

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

# 원전·에너지 기업 선택형 과제 참여기업 모집

원전과 함께, 중소기업의  
내일을 지원합니다.

CLEAN  
ENERGY  
SUSTAINABLE  
TOMORROW

중소기업의 도전이  
더 안전한 에너지를 만듭니다.

K-HNP  
with SMEs



안정적인  
에너지,  
함께 만드는  
더 큰 성장



## 모집대상

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및  
에너지·신재생 분야 공급망  
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



## 지원규모

기업당 최대

**800만원** 이내



## 신청기간

**2026. 9. 14.(월) ~  
10. 8.(목) 17:00까지**



## 선택형 과제 지원분야



### 인증·시험·검증

원전 관련 인증 취득,  
시험·평가, 검증 등



### 품질 및 공급망 대응

품질체계 구축,  
공급자 등록 준비 등



### 기술개선 및 사업화

제품·기술 개선,  
시제품 제작, 사업화 지원 등



## 문의처

수행기관 **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**

담당자 031-8064-1085 | dcjang@gsmba.kr

※ 자세한 내용은  
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공고문 바로가기

지속 가능한 에너지, 함께하는 성장

KOREA HYDRO & NUCLEAR POWER

CLEAN  
ENERGY  
SUSTAINABLE  
TOMORROW

## 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 원전·에너지 분야 선택형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한국수력원자력(주)과 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원전·에너지 분야(신재생 에너지 포함)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『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』을 시행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4일

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

### 1

#### 과제개요

- ☐ (사 업 명) 2026년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센터 지원사업
- ☐ (사업기간) 2026년 8월 ~ 2027년 7월
- ☐ (과 제 명) 한수원 우문현답 현장 클리닉 센터 선택형 지원 과제
- ☐ (지원기관) 한국수력원자력(수행기관 :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)
- ☐ (추진목적)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 및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원전·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기업별 맞춤형 실행 지원을 통해 기술·품질 경쟁력 강화 및 원전·에너지 산업 공급망 진입·확대 지원
- ☐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, 10개사 내외

## 2

## 지원대상 및 요건

- (지원대상) 한수원 협력기업 및 원전·에너지(신재생에너지 포함) 공급망 참여기업 또는 해당분야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(스타트업 포함)
- (지원요건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한수원 협력기업 또는 원전·에너지·신재생 분야 공급망 참여·진입기업으로 [별첨1] 지원대상 유형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- ※ 상기 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에서 최종 판단
- (신청제한)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
-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, 부도 또는 법정관리, 파산·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았거나 체납 중인 기업
- 금융기관 등과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
-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사업장(근로기준법 제43조2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
- 한국수력원자력(주)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
- 본 사업기간 내 동일한 과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-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## 3

## 지원내용

- (지원내용) 원전·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·시험·검증, 품질·공급망 대응, 기술개선·사업화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

□ (지 원 금) 기업당 최대 800만원

- 공급가액 기준,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
- 선정기업이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완료보고 및 증빙 자료 검토를 거쳐 지원금 정산 지급

□ (과제수행기간) 협약일 ~ 2027. 6월 30일

□ (지원항목)

- 기업별 수요에 따라 아래 지원분야(①~③) 중 1개 이상을 선택(복수 분야 신청 가능)하여 기업당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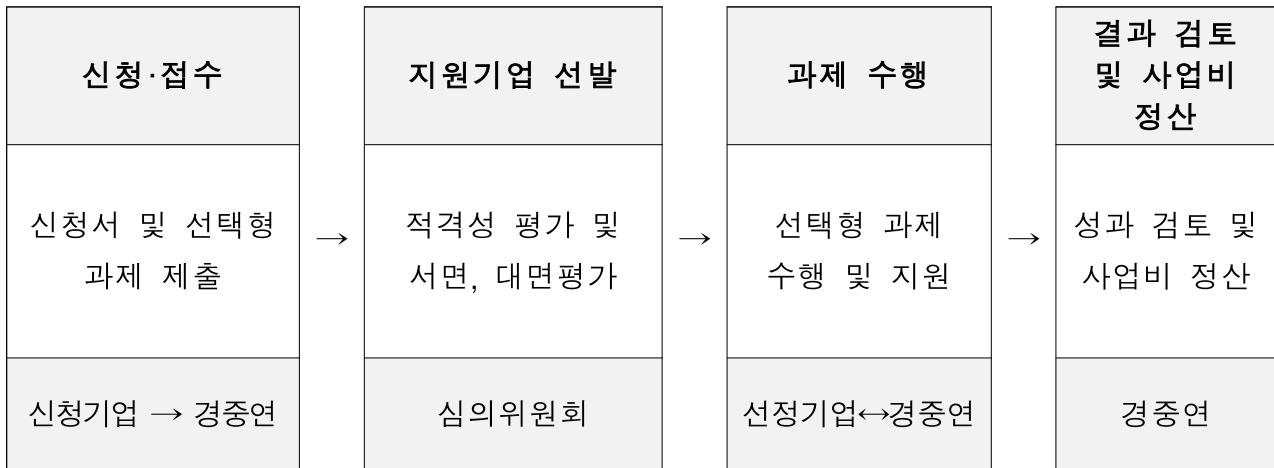
\* 예시) ‘인증·시험·검증 + 기술개선·사업화’ 등 복수 분야 조합 신청 또는 ‘품질 및 공급망 대응’ 등 단일 분야 신청 가능

\* 전문가 자문은 선택형 과제 지원금(최대 800만원)과 별도로 제공

| 지원분야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선택<br>형<br>과제<br>지원    | ①<br>인증·시험·검증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내·외 인증취득, 시험분석, 성능평가, 시험·검증 수수료지원</li> <li>■ 인증심사 및 시험·인증용 시제품 제작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②<br>품질 및 공급망<br>대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수원 등 원전산업 공급자 등록, 품질평가, 외부 심사 대응 지원</li> <li>■ 품질문서 구축, 품질보증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활용 수수료 지원</li> </ul>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③<br>기술개선 및<br>사업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품 성능개선, 공정개선, 기술검증비 지원</li> <li>■ 시제품 고도화 및 제품 상용화·사업화 추진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통<br>지원<br>(별도<br>지원) | 전문가 자문<br>지원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</li> <li>■ 원전 분야 유망 스타트업 대상 공급망 진입 및 기술사업화 자문 지원</li> </ul> |

## 4

## 과제 추진절차



① (신청·접수) 신청서 및 선택형 과제 신청·접수

② (지원기업 선발) 1차 서면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 과제 필요성, 실현가능성 등 평가

- 신청 자격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(**※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**) [별첨2]

\* 동점자 처리기준 : 동점자 발생 시 ① 원전·에너지 산업 연계성 및 공급망 진입 가능성, ② 기술·제품의 유망성 및 성장가능성, ③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, ④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, ⑤ 사업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해당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, 상기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함.

③ (과제 수행) 선정 기업의 선택형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집행

④ (사업비 정산)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정산

## 5

## 신청 안내

□ 신청·접수기간 : **공고일로부터 ~ 26. 10. 8(목) 17:00까지**

□ 신청방법 : 지원신청서 등 아래의 신청서류 E-mail 접수

- E-mail 접수 : dcjang@gsmmba.kr (Tel) 031-8064-1085

## □ 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 | 1.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   | [붙임1] 사업신청서(양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2. 과제 추진계획서              | [붙임2] 선택형 과제 추진계획서(양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    | [붙임3] 동의서(양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4. 자격요건 증빙자료             | [별첨1] 자격요건 유형별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5.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6.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| 유효기간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8. 재무제표(2025년)           | 2025년 결산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필수 | 9.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 |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자료<br>( <a href="https://www.4insure.or.kr/pbiz/main/main.do/">https://www.4insure.or.kr/pbiz/main/main.do/</a> ) |
| 선택 | 10. 여성기업·장애인기업 등 가점 증빙자료 | 해당 기업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제출 서류 미비 및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서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6

## 문의처

○ (사)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팀

- 소 재 지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
- 홈페이지 : [www.gsmba.kr](http://www.gsmba.kr)(공지사항-공지글1번 참조)
- 담당자 연락처 : (Tel) 031-8064-1085 / (E-mail) [dcjang@gsmba.kr](mailto:dcjang@gsmba.kr)

[별첨1] 지원대상 유형 및 확인자료

| 구분        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|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유자격공급사   |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            | 이미 한수원 공급자로 등록된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협의회회원사   |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      | 한수원 동반성장협회에 가입한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별도 제출 불필요<br>(한수원 회원사 명부를 통해 확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거래기업     | 최근 3년 이내 한수원 거래실적 보유기업 | 최근 3년 동안 한수원과 계약·납품 등 실제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약서 또는 거래·납품실적증명서 (최근 3년)<br>*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증명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신규진입기업   | 원전·에너지 산업 공급망 진입 희망기업  | 한수원 거래실적은 없지만 원전·에너지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·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산업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 | 제품·기술 소개자료(필수) + 다음 중 1개 이상:<br>1) 원전·발전·에너지 분야 공급자 등록자료<br>2) 원전·에너지 분야 정부·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·협약서<br>3) 신청 제품·기술과 직접 관련된 인증서<br>4) 신청 제품·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<br>5) 중소기업기술마켓(에너지분야) 인증서 또는 인증내역 확인자료 |
| ⑤ 원전 스타트업 | 원전 분야 유망 스타트업          | 원전기술 또는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분야 제품·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기업      | 창업기업 확인자료 + 제품·기술 소개자료(필수)+ ④의 객관적 확인자료 중 1개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첨2] 평가기준(안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 가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|  | 세부 평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요건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요건 충족여부                     |  | ·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|  | · 지원대상 구분 中 1개 이상 해당 여부<br>①유자격 공급사, ②협의회 회원사, ③거래기업, ④신규 진입기업, ⑤원전 스타트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 가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|  | 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평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규모<br>및 지원<br>필요도<br>(25) | 근로자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(피보험자 수)<br>10명 이하(10) 11-30명(8) 31-50명(6) 51-100명(4) 101명 이상 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출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'25년 매출액 기준('26년 창업기업의 경우 8점 부여)<br>10억원 이하(10) 10억원 초과-50억원 이하(8) 50억원 초과-100억원 이하(6)<br>100억원 초과-300억원 이하(4) 300억원 초과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 업력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<br>3년 이하(5) 3년 초과-5년 이하(4), 5년 초과-7년 이하(3),<br>7년 초과-10년 이하(2) 10년 초과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기업이 보유한 기술·제품 또는 사업화 과정에서 현재 해결이<br>필요한 애로사항이 명확하며, 외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획<br>타당성<br>(15)           | 과제 목적 및 적합성                   |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신청과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기업의 현안 해결과 연계되며, 본<br>사업의 지원목적 및 선택형 과제 지원분야에 부합하는지<br>매우우수(5) 우수(4) 보통(3) 미흡(2) 매우 미흡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·제품의 유망성 및<br>성장가능성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보유 기술·제품의 차별성·경쟁력·시장성 및 향후 사업화·성장<br>가능성이 있는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성 및<br>실현가능성<br>(20)      | 원전·에너지 산업 연계성<br>및 공급망 진입 가능성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보유 기술·제품이 원전·에너지 산업에 활용·적용될 가능성이<br>있으며, 기존 공급망 확대 또는 신규 진입 가능성이 있는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계획의 구체성           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추진내용·방법·일정·목표가 구체적이며 신청과제를 실제 수행할<br>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계획<br>적정성<br>(20)         | 사업비 활용계획의<br>적정성    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신청 사업비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,<br>산출근거·단가·수량 등이 구체적이며 지원금 사용계획이 적정한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<br>측정가능성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명확하며 완료 시<br>객관적으로 확인·측정할 수 있는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대효과<br>(20)                |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|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매출·수출·사업화·기술향상·품질개선·고용창출·원전·에너지<br>공급망 진입 등 기업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되는지<br>매우우수(10) 우수(8) 보통(6) 미흡(4) 매우 미흡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가가점<br>(최대 3점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여성기업(2)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여성기업<br>· 장애인기업(2) :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장애인기업<br>· KHNP AI누리 입주기업(2) : 한국수력원자력 보육시설 입주기업<br>· 창업기업(1)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업<br>· 청년창업기업(1)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|